

Question

종합엔지니어링사입니다. 설계, 감리, 시공, 시운전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본사, 현장포함 총 직원수는 850명 내외입니다. 현재 본사 소재지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06년 9월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해당된다면 구성 및 운영(개최 시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Answer

귀하의 질의 관련 내용을 검토한바, 귀하의 사업장은 2006년 9월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구성 : 근로자와 동수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각각 10인 이내를 원칙으로 함

○위원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위원(10인이내)

- 당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인 - 보건관리자 1인
-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장의 장

나. 운영

○회의개최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회의록 작성, 비치

다. 기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불이행시 즉시 시정토록 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근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Question

당 현장에 외부 쌍줄 비계 부분에 분진방지 시설이 없어서(환경관리비가 없는 현장입니다.) 설치를 준비하는 중에 시청 환경과로부터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권고(정식 공문은 없음) 받고, 방진망을 설치하기 위해, 발주처인 000시설과에 가설공사로 설계변경을 의뢰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방진망설치가 가설공사가 아닌 안전관리비 항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지도기관에 문의한 결과 방진망은 환경관리비 항목이며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방진망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5-6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진설비는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는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이므로 외부 비계위 분진망 설치에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2005년 6월 1일 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호구 미착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1차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5만원)을 부과하게 한다는 홍보 리플릿을 보게 되었는데 그 관련 법규가 어디에 공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에 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5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해당 근로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독촉장 이외에 다른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절차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에 의한 것으로 동법 규정을 해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무규정을 부과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하나 1차 경고 등 유예기간을 둔 것이고 2005. 6. 1 부터는 지금까지 충분히 홍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즉시 부과토록 한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스티커의 예와 같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낸 후, 조치되지 않았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